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5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/ 팀원 문성현 [6585]/E-mail: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4184호

시행일자 2025. 3. 2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1116(2025.3.27.)

2. 상기와 관련,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·경남 등 4개 지자체(시·군·구)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.

3. 이에,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·조제(본인 부담금은 부담)받을 수 있도록 중복처방 예외사유 추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는바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

- (시군구) 울산광역시(울주군), 경상북도(의성군), 경상남도(하동군, 산청군)

○ 예외사유 :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

※ DUR 예외사유 기재란에 ‘산불피해 재난지역’ 으로 기재

*첨부 : 복지부 공문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